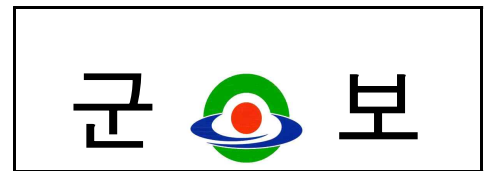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71호 2022. 6. 16.(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883)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예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2. 개정이유

군정성과 우수자 및 부서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신청 요건, 심사 기준 등을 정비해 포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센티브 지급 분야 정비(안 제4조)

- 당 초 : 11개 분야(기관평가 우수부서,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 시책개발, 규제개혁, 언론보도, 주민숙원해결,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 변 경 : 8개 분야(기관평가 우수부서,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 시책개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나. 기관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한도액 조정(안 별표)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한도액 조정
: 추가금액(상위기관 시상금) 삭제
- 감액 기준 및 지급제외 기준 신설

다.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담당자 인센티브 항목 신설(안 별표)

-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분야」에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담당자 인센티브 항목 신설 → 경상북도 우수사례 인용 시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라. 인센티브 지급 분야별 신청·심의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doit2933@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 : 054-650-60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시책발굴”을 “시책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7.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공적 분야

8.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분야

제5조제2항 중 “제4조제10호까지”를 “제4조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조제8호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분야는 별도 신청 없이 부서·읍면별 제출한 실적 증빙자료로 신청을 대신한다.

제7조제1항 중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제11호”를 “제4조제8호”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센티브 지급 기준

1. 기관평가 우수부서 분야

등급	평가단위	인센티브	
		포상금 (부서)	특별휴가 (유공자)
최우수 (1위)	• 중앙 단위 평가	200만원	2일
	• 광역 단위 평가	150만원	
	• 민간기관 평가(중앙 및 도 단위)	100만원	
우수 (2위)	• 중앙 단위 평가	150만원	
	• 광역 단위 평가	100만원	
	• 민간기관 평가(중앙 및 도 단위)	70만원	
장려 (3위 이하)	• 중앙 단위 평가	100만원	
	• 광역 단위 평가	70만원	
	• 민간기관 평가(중앙 및 도 단위)	50만원	

※ 순위 결정(등급) 없이 단순 우수기관으로 선정(기관표창)된 경우 평가단위별로 우수 등급을 적용

※ 다음의 경우 수상등급의 1단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 절대평가 등에 따라 다수 기관이 동일한 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 시상(표창장, 표창패 등)이 없는 단순 평가인 경우

※ 참가비나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는 지급 제외

※ 부서가 공동 추진(협업)하여 수상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 지급
 - 추진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타부서와 협업한 경우
 : 추진부서(70%), 협업부서(30%) 지급
 - 추진부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전체 부서와 협업한 경우
 : 추진부서(30%), 협업부서(70%) 지급

2. 투자유치 분야

평가단위(투자유치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200억원 이상	125만원	250만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75만원	150만원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5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5만원	50만원

※ 투자유치액 기준

－ 산업단지 내

-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상의 총투자금액
- 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미신청자 : 분양계약서 상의 총분양금액

－ 산업단지 외(민간투자 및 기관유치 등) : 분양(또는 매매) 금액 + 건축비

※ 투자유치일 기준

－ 산업단지 내

-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자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 공문 제출일
- 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미신청자 : 분양계약서 작성일

－ 산업단지 외(민간투자 및 기관유치 등) : 건축 착공신고서 제출일

※ 투자유치 담당 직원의 경우 50%를 감하여 포상금을 지급(부서 미지급).

3-가. 공모사업 분야

평가단위(국도비 합계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70억원 이상	125만원	250만원
4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15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75만원	150만원
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5억원 미만	25만원	50만원

※ 국도비 공모사업 사전심사를 거쳐 확보한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만 인정

※ 최초 1회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내시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 미공모사업, 통상적인 공모사업, 군 실령사업 신청 불가

3-나. 신규 현안 사업 분야

평가단위(총사업비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150억원 이상 ~	125만원	250만원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6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75만원	150만원
30억원 이상 ~ 60억 미만	50만원	100만원

※ 신규 국도비 사업이면서 1차년도 사업 추진 후 신청 가능
(미공모사업, 통상적인 공모사업, 군 실령사업 신청 가능)

4. 예산절감 분야

평가단위(총사업비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10억원 이상	75만원	150만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5만원	50만원

5. 세입증대 분야

평가단위(총사업비 금액)	포상금	
	부 서	유공자
1억원 이상	75만원	15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만원	100만원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5만원	50만원

6. 시책개발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부서	유공자
시책(자체사업)을 추진하여 파급효과가 큰 경우	75만원	150만원
	50만원	100만원
	25만원	50만원

※ 사업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7.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분야

- 중앙 또는 광역 단위 파급효과가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이룬 경우
- 집단·고질민원, 숙원사업 등을 해결한 경우 등

평가단위	포상금	
위원회에서 공감하는 공적	유공자	100만원, 70만원, 50만원

※ 부서(팀)의 일상적인 업무,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사업, 종결되지 않은 사업은 심사 제외

8.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분야

평가단위	포상금			
부서업무 종합평가(부서평가)	부서	300만원 (최우수)	2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부서업무 종합평가(담당자 인센티브)	유공자	인용 시 1인당 최대 50만원		
읍면행정 종합평가(읍면평가)	읍면	300만원 (최우수)	2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업무추진 우수사례 평가	부서 읍면	150만원 (최우수)	100만원 (우수)	80만원 (장려)
※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은 매년 초 수립하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계획을 따름 ※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인용 시 유공자 인센티브 지급				

○○○○년도 중앙 및 도 단위 평가

기관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신청서

평가단위		평 가 명			
평가기관		수상내용 및 부상	등급	시상금	상사업비
인센티브	포상금(부서)		특별휴가 2일(유공자)		
신청내용					
기 타	서무담당자	계좌번호			

위와 같이 ○○○○년도 중앙 및 도 단위 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과장 (인)

- 붙임 1. 평가 관련 공문 1부
 2. 수상 결과(표창장, 표창패 등) 사본 1부

인센티브 신청서

신청 분야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비고	
-------	---------------	----	--

☐ 신청 개요

- 신청취지
- 공적내용(요약)

☐ 추진 노력

(단위 : 회)

노력실적	기관방문	캠페인	설명회	교육	기타	비고
						출장요약 표

노력기간

○ 성과 창출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 완료 단계까지 전 기간 기재
- 추진경위, 추진일정 등 추진과정

특이사항

○ 집단민원, 규제개혁 등 추진 중 경험한 어려움과 극복 노력(정성)

☐ 추진 성과

구분	시행전	시행후

※ 각종 증빙자료 미첨부시 불인정

신청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검 토 조 서

[추천개요]

분 야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대 상 자	
추천내용	

[검토의견]

■ 기본심사

종 결 내 용	•
기 타	

■ 세부심사

독 창 성 (창 의 성)		
적 절 성		
파 급 효 과		
노력도	기 간	
	실 적	

검토자 : 직) 성명 (인)

심 사 조 서

[심사개요]

분 야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
대 상 자	
공 통 사 항	- 기본심사 : 심사위원 1/2 이상 “부” 의견 시 인센티브 지급 제외 - 세부심사 : 기본심사에서 “여”를 선택한 심사위원만 세부심사 실시 세부심사를 실시한 심사위원 1/2이상이 75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 - 공적검토조서 참고하여 평가

[평 가]

■ 기본심사

심 사 항 목		여 부	비 고
그 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한 탁월한 공적에 해당	여() 부()	※ 해당()에 “√” 표시 ※ “여”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실시 ※ “부”를 선택한 경우 세부심사 미실시

■ 세부심사(기본심사에서 “여”란에 “√”표시한 경우만 진행)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결 과					비 고
계			()점					※ 해당()에 “√” 표시
독창성(창의성) • 업무연관성 • 새로운 아이디어/ 벤치마킹		20	최 상	상	중	하	최하	
			(20)	(15)	(10)	(5)	(2)	
적절성 • 사업 추진 시기 • 절차이행 등 추진 과 정 • 군정목표/방향 부합 여 부		20	최 상	상	중	하	최하	
			(20)	(15)	(10)	(5)	(2)	
파급효과 • 수혜범위(군/면/마을) • 군정발전기여도		20	최 상	상	중	하	최하	
			(20)	(15)	(10)	(5)	(2)	
노력도	노력기간	20	12개월 이상	12~6개월 이상	6~3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0)	(17)	(14)	(11)		
	실적 • 기관방문, 회의, 설명회 등 횟수 ※미증빙 시 최저점	20	10회 이상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1회 이상	
			(20)	(17)	(14)	(11)	(8)	

심사자 : 직) 성명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센티브 지급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적이 있는 부서 및 직원 에게 별표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인센티브 지급분야)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시책발굴 분야</u>	6. <u>시책개발</u> --
7. <u>규제개혁(제도개선) 분야</u>	7. <u>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u> <u>“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u> <u>는 공적 분야</u>
8. <u>주민숙원해결 분야</u>	8. <u>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분</u> <u>야</u>
9. <u>의로운 공무원 분야</u>	<u><삭 제></u>
10. <u>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인</u> <u>정하는 공적 분야</u>	<u><삭 제></u>
11. <u>군정 주요업무 추진평가 우</u> <u>수부서 분야</u>	<u><삭 제></u>
제5조(인센티브 신청) ① (생 략)	제5조(인센티브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2호부터 <u>제4조제10</u> <u>호까지</u> 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해당 부서장의 확인 후 별지 제2호서 식의 인센티브 신청서, 별지 제	② ----- <u>제4조제7호</u> <u>까지</u> ----- ----- ----- -----

3호서식의 출장요약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u>제4조제11호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평가 우수부서 분야는 별도 신청없이 부서별 제출한 실적 증빙자료로 신청을 대신한다.</u> 제7조(심의) ① 기획팀장은 인센티브 신청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검토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u>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위원 심사조서를 수합하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u>제4조제11호의 경우에는</u> 군수의 결재를 받은 평가결과 공문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제4조제8호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 평가 분야는 별도 신청없이 부서・읍면별 제출한 실적 증빙자료로 신청을 대신한다.</u> 제7조(심의) ① ----- ----- ----- ----- 위 원회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제4조제8호</u>----- ----- -----.
--	---